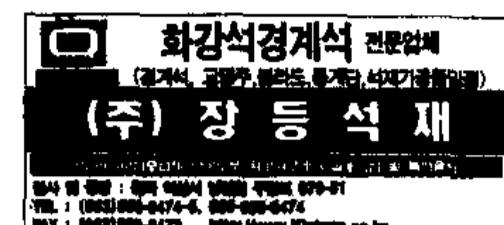


石材人



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강화

7월부터 일반주거지 3종 구분 적용 하반기 주택건설사업 난항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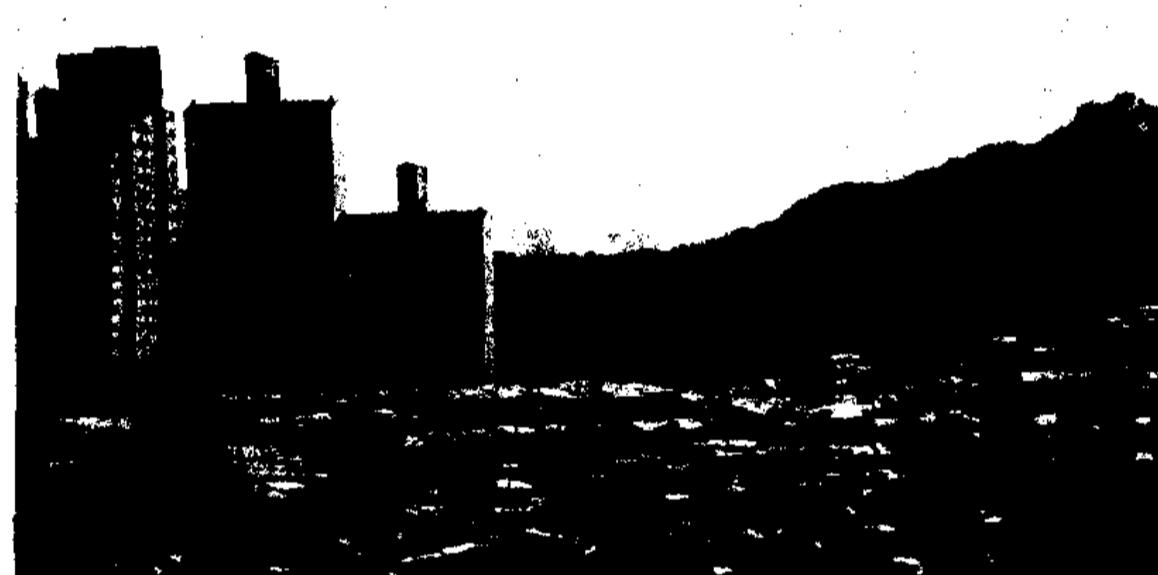
7월부터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용적률 적용이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로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용적률을 적용하였다. 6월 말까지 하루不停地 했거나 개발실탁, 공사계약, 실시설계계약, 감리계약 중 하나만 체결하고 실제 이행을 시작한 회사는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 기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지만 종세분화 후에는 1종 주거지역은 이를 150% 이하로, 제2종은 200% 이하로, 제3종은 250% 이하로 강화된다. 서울지역 구현률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거의 대부분 3종(용적률 250%)으로 임인했지만 서울시는 일단 2종으로 지정한 뒤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증감하겠다는 입장으로 서울시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2종(용적률

200%)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치는 '경과조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공시에 학수한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6월 24일 건설교통부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조건으로 허용되는 구제대상(경과규정)인 사업 또는 공시에 학수한자의 범위를 5가지로 구체화해서 지방자

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우전진 단 절차도 강화되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는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우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7월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뒤에는 구역지정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다만 재건축연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건물이 위험한 수준에 있다면 우전진단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역지정은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뒤 할 수 있으며 구역지정이 되어 재

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만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3년간은 기본계획 수립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외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전 재건축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4개월간 서울 시내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관계자에 따르면 200% 용적률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분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아파트 등 모든 주택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일반 주거지역이 1.23종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부터 건축물 일정거리 둬야

용도변경, 대규모 보수·보강시 신고제서 허가제로

내년부터 건축물은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둘어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의 안전, 기능,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을 대한 성능평가제가 도입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돼 매매시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

경과 안전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풀자로 한 「건축구제 협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내지내 공지 기준」을 부활하여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법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위반 사실을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2003 건설의 날(2003.6.18)

“인간·환경·건설을 하나로”

2003년 건설의 날(2003.6.18)을 맞이하여 건설업계가 “인간·환경·건설을 하나로”라는 공통 과제를 선보였다. 건설관련 업체 13개로 구성된 대안 건설단체연합회(회장 미행렬)는 이 날 서울에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친환경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했다. 이는 개발이 본업인 건설산업이 건설과정에서 질서연으로 부딪힐 수 부에 있는 환경보존 문제를 최소화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인간중심의 친환경 건설은 21세기 세계 건설업계가 풀

현재 우리나라 환경관련 기술개발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대다수가 환경오염방지 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간중심의 친환경경영과 사업관리 기술, 자연환경보존, 복원기술,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광범위한 환경기술 등 친환경 핵심기술은 매우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업계는 환경친화적 프로젝트 의사결정 시스템, 기술혁신과 자체개발 등을 포함하는 관리, 경영실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기술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지난 90년대 초부터 건설사업을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바꿔나가고 있어 건설산업인식 운동, 건설신진화정책, 건설산업환경 행동비전 등의 건설정책을 마련하여, 건설정책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손상을 최소화하고 천연자원과 생태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친환경 건설시스템이 발달한다.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생산과정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다른 배출된다. 건설구조물의 신축과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금품으로 매립지 부족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 교량 등 상당수의 SOC 개발에서는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 감리업체 감독 책임이 없어

7월 1일부터 시행

“현장관리는 공정확인 책임과는 무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목기화재구역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면적의 80%를 가져야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이를려 2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승인법상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며, 투기과열지구내 지역 및 직장주변조합의 조합원지역도 소유권이 전동기사까지 양도·증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23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승인법시행령 개정안이 2003년 6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주택법규에 관한 규제개정안에 대한 예비체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독하는 감리업체를 관리함을 밟으며 단순히 공사가 실제로나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관사는 “D사는 수급업체의 공사에 대해 감리활동을 한 데 지난 5월말으로 원고를 피는 사용자 및 피사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고, D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석재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하면 중 시설미비로 추락해 사망해버렸다.

보디치노

처럼 보이지만

훨씬 좋은

L.M대리석

그동안 생산량 부족으로 새매 공장에 도착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지난 5월말 생산시설을 증설하였으나 주문 주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66-5 302호 대표 이동영

H.P:011-561-8488 TEL:051) 582-3919 FAX:051) 582-3918

샘플보관소

서울 : 031-424-8250 018-245-3213

부산 : 011-561-8488

대전 : 042-477-6641

대구 : 054-955-8200

광주 : 011-635-2500

진주 : 011-551-8627

제주 : 011-696-4970

엄청쌉니다~